

## 2024년 (재)구미시장학재단 「지역대학 - 지역 내 취·창업 연계 장학생」 선발 공고

구미시 우수인재의 지역 내 취·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구미시장학재단 「지역대학 - 지역 내 취·창업 연계 장학생」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6일

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이사장



### I 선발개요

- 신청기간 : 2024. 11. 27.(수) 09:00 ~ 12. 9.(월) 18:00 [13일간]
- 선발대상 : 구미시 소재 대학교 졸업자 중, ① 관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② 관내 창업 유지 중인 자
- 선발인원 : **25명**
- 지원금액 : 1인당 120만원
- 선발방법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발
-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  - (온라인) 구미시장학재단 홈페이지([www.gumigh.or.kr](http://www.gumigh.or.kr))
  - (방문) 구미시 송원서로 7, 구미시청 별관5 3층 교육청소년과

※ 토·일·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(12~13시) 제외
- 구비서류 : **[붙임 1] 참조**
  - ※ 신청자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서류 미비 시, 선발심사 대상에서 제외
  - ※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
    - ▶ 구미시장학재단 홈페이지([www.gumigh.or.kr](http://www.gumigh.or.kr)) > 장학재단 소식 > 공지사항

## III

#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

### ■ 신청자격

#### ○ 공통요건

- (주 소 지) 본인이 공고일(‘24.11.26)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(학력사항) 구미시 소재 대학교\* 2022~2024년도 졸업자 중, 졸업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 C+(2.5/4.5만점) 이상인 자

\* 경운대, 구미대, 국립금오공과대, 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

※ 직전 2개 학기 최소 24학점 이상 이수, 계절학기 제외

#### ○ 지원유형별 요건

- (취업지원) 공고일 현재 근로소득자 신분으로, 구미시 소재 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자

#### ※ 중소·중견기업 인정범위

- ▶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
- ▶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(중견기업법)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

✓ 인정범위 제외기준(붙임 2) 해당 기관 종사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

- (창업지원) 구미시 소재 사업체 창업주\*로서, 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·유지\*\* 중인 자

\*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에 해당(공동대표자 포함)

\*\*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 급여 선정기준 초과(‘24년 713,102원)

### ■ 심사기준

배점기준(100점)	세 부 내 용
학업성적 (70)	▶ 대학교 졸업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
재직·창업기간 (30)	▶ (취업지원) 대학 졸업 후, 중소·중견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 중인 기간 ▶ (창업지원) 구미시 소재 사업체 창업 유지 기간* *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합산 ※ 1개월은 30일 기준

※ 동률일 경우, 학업성적 > 재직·창업기간 순으로 우선선발

### Ⅲ 추진일정

추진내용	일정	비고
▶ 선발계획 공고	‘24. 11. 26.(화)	재단 및 市 홈페이지
▶ 신청서 접수	‘24. 11. 27. ~ 12. 9.	온라인 또는 방문
▶ 서류심사 및 장학위원회 심의	‘24. 12. 9. ~ 12. 17.	
▶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	‘24. 12. 18.(수)	재단 홈페이지
▶ 장학금 지급신청서 접수	‘24. 12. 19. ~ 12. 20.	온라인 또는 방문
▶ 장학금 지급	‘24. 12월 4주차	장학생 본인 계좌 입금

#### 《 유의사항 》

- ▶ **상기 추진일정**은 장학재단 사정에 따라 **변동 가능**
- ▶ (재)구미시장학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, 정관 및 시행세칙에 없는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함.

- \* [별지] 1. 장학금 지원신청서  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# 붙임 1

## 장학생 신청자 구비서류

### 공통

연번	구 비 서 류	비 고
1	장학금 지원신청서	▶ 방문 접수 시, '별지 1호' 서식 작성·제출 (온라인 신청자 ☞ 제출 불요)
2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▶ '별지 2호' 서식 작성·제출 (온라인 신청자 ☞ 제출 불요)
3	주민등록초본(신청자 본인) ✓ '등본'이 아닌 '초본' 제출	▶ 주소지 기준(구미시 1년 이상 거주) 충족 여부 확인용 ※ 초본 발급 시, <u>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사항 포함</u>
4	대학교 졸업증명서	-
5	대학교 성적증명서	▶ 졸업 직전 2개 학기 성적증명서 ※ 2개 학기 합산 <u>24학점 이상</u> 이수 필요

※ 모든 서류는 선발 공고일('24.11.26) 이후 발급본에 한함.

### 지원유형별

구 분	용 도	구 비 서 류
취업지원	재직여부 확인	▶ 재직증명서 ▶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,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중 <b>택 1</b> ※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, 고용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
	기업정보 확인	▶ 재직업체 사업자등록증 ▶ 중소기업 확인서 ※ '중소기업 기준검토표'로 대체 가능 [단, 법인대표자 직인, 발급 회계(세무)사무소 명·사업자 번호·직인을 모두 포함해야 인정]
	부모기업 확인	▶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또는 부모 기준 발급본)
창업지원	기업정보 확인	▶ 운영업체 사업자등록증
	매출액 확인	▶ 매출액 및 영업활동 증빙서류 -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서 ※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간 총 매출액 확인용

※ 모든 서류는 선발 공고일('24.11.26) 이후 발급본에 한함.  
(단,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 인정)

**취업지원형**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기관
- 비영리법인,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
  - ※ 단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
- 부(父) 또는 모(母)가 대표로 있는 기업
- 인정범위 제외 업종 ☞ ‘창업지원형’ 동일 적용
  - 소비 및 향락업 :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, 「풍속영업규제법」 제2조 및 「사행행위규제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\*
  - \*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
  -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점업(I)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R), 무도장 운영업(R)

연번	소분류	세분류	세세분류	
			업종코드	업종명
1	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	주점업	56211	일반 유흥 주점업
2			56212	무도 유흥 주점업
3			56213	생맥주 전문점
4			56219	기타 주점업
5	영화, 비디오물,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	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6	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	오락장 운영업	91223	노래 연습장 운영업
7	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1	복권 발행 및 판매업
8			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		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		91291

**창업지원형**

- ‘취업지원형’ 대상기업 인정범위 제외 업종과 기준 동일



